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 월 29 일

여 수 시 장 2023.12.29



여수시 조례 제2029호

붙임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계획(수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공간환경정보를 반영한 지역환경 보전 방안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할 때에는 변화한 환경여건을 반영하되, 기존의 환경계획과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1.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4조에 해당하는 계획

2. 그 밖에 환경계획 수립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등

④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전 과정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초안을 만들어 환경 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관련되어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제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환경계획수립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분야별 정책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여수시의회 의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로 임원 이상인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환경계획 수립 확정시까지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제4항제1호 중 “환경기본계획의”를 “법에 따른 환경계획”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생 략)</p> <p>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8조(<u>환경기본계획</u>) ① 시장은 환경 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u>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u>환경기본계획</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2. (생 략)</p> <p><u>&lt;신 설&gt;</u></p> <p>3. ~ 5. (생 략)</p> <p>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수시 환경정책위원회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u>환경계획의 수립</u>) ① -----</p> <p>-----</p> <p>----- <u>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계획(수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u></p> <p>② ----- <u>환경계획</u>-----</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공간환경정보를 반영한 지역환경 보전 방안</u></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와 같음)</p> <p>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할 때에는 변화한 환경여건을 반영하되, 기존의 환경계획과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p> <p>1.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p>

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4조에  
해당하는 계획

2. 그 밖에 환경계획 수립 시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등

<신 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  
경하는 전 과정에서 많은 지역 주  
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환경  
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초안을 만들어  
환경 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관계  
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제8조의2(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시  
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정보  
를 전자적 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과 관  
련되어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신 설>

제9조(환경계획수립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분야별 정책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구  
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여수시의회 의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에 풍부한 사람
2. 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로 임원 이상인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환경계획 수립 확정시 까지로 한다.

#### 제9조 ~ 제16조 (생략)

제17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 제18조 ~ 제24조 (생략)

#### 제10조 ~ 제17조 (현행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18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법에 따른 환경계획 -----
2. · 3. (현행과 같음)

#### 제19조 ~ 제25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